

I·SEOUL·U

외국인 창업상담 사례집

CONSULTING CASE BOOK
FOR FOREIGN
START-UPS



sba

발행처: 서울산업진흥원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Publisher: Seoul Business Agency Address: 38 Jongno, Jongno-gu, Seoul

sba

외국인 창업상담 사례집

목 차	1. 해외기업 국내진출	
	Q.01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08 - 08
	Q.02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한국법인 설치)	08 - 10
	Q.03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지점 설치)	10 - 11
	Q.04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연락사무소 설치)	12 - 13
	Q.05 해외기업의 한국 내 통장 개설 방법은?	13 - 13
	2. 외국인 창업	
	Q.06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16 - 17
	Q.07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17 - 19
	Q.08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기술창업)	19 - 21
	Q.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 학위 취득자 개인사업)	21 - 23
	Q.10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무역업 창업)	23 - 25
	3. 회사운영	
	Q.11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28 - 29
	Q.12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30 - 30
	Q.13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정비자(E-7) 발급의 요건은?	31 - 32
	Q.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32 - 32
	Q.1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32 - 34
	Q.1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은?	34 - 35
	4. 기타	
	Q.17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38 - 38
	Q.18 유학생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38 - 39
	Q.19 자본금 부족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39 - 39
	Q.20 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점은?	40 - 40
	Q.21 기술창업비자(D-8-4)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40 - 41
	Q.2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은?	41 - 43
	Q.23 공문서 및 사문서 서류 준비 방법	43 - 44
	Q.24 아포스티유(Apostille)란?	44 - 45
	Q.25 거주사실증명서란?	45 - 45
	 참고자료 	96

1장

해외기업 국내진출

- Q.01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 Q.02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한국법인 설치)
- Q.03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지점 설치)
- Q.04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연락사무소 설치)
- Q.05 해외기업의 한국 내 통장 개설 방법은?

1. 해외기업 국내진출

Q.01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 방법은?

해외에 있는 기업 A는 한국 진출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한국으로의 회사 진출 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본사와 한국에 설치하려는 사무실과의 관계와 사업 구조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해외본사와 한국에 설치하려는 사무실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의 구조 및 돈의 흐름을 먼저 생각해서, 알맞은 형태로 진출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설치한 사무실의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을 할 것인지 한국에서 고용을 할 것인지, 대표자를 외국인으로 할 것인지, 한국인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 회사설립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B. 한국으로의 진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작정 한국으로의 진출방법을 찾는 것 보다는 왜 진출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진출의 이유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시장조사 등의 보조적 활동인지에 따라 설립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출 목적에 따라 한국에 사무실을 설립한 후 다른 형태의 사무실을 다시 설립할 수 있다.

C. 한국 진출의 방법

외국법인의 한국 진출의 방법은 ① 현지법인 설립 ② 지점설립 ③ 연락사무소 설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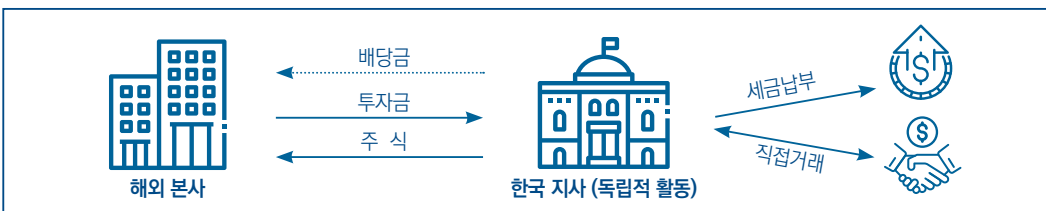
1. 현지법인(지사, 자회사): 한국에 거주하는 국내법인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지점: 비거주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3. 연락사무소: 수익이 생기지 않는 비영업적 활동을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Q.02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한국법인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B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려 한다. 이때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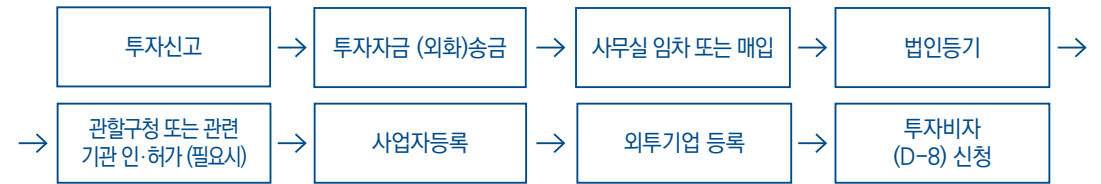
A. 외국인직접투자법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외국인직접투자자는 투자신고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투자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국의 본사와 한국법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법인은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다.(정관의 사업목적은 본사에 의존되지 않는다). 이때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 상당의 외환이어야 한다.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요건 (해외에서 도입한 투자금액 최소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보유)
 ※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로 구분될 수 있다.

B.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회사의 설립 방법



① 투자신고

- 신고접수기관 : 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서(각 기관에서 교부)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본사의 실체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② 투자금액 송금

- 세관 휴대반입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 송금인: 외국인투자기업
- ※ 송금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다.

③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④ 법인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¹⁾의 도움이 필요하다.)

- 준비서류
 - 본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 관공서에서 발행한 본사의 실체에 관한 증명서(주소, 상호, 대표자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 하다.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등)
 - 한국법인 대표자의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 한국인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도 필요
 - 자본금 증명 (잔액증명 또는 주금납입증서)
 - ※ 한국인 또는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도 필요
- 기타
 - 회사명 - 사업목적 - 법인종류

⑤ 관할구청 또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 ※ 인허가 필요 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및 취득

⑥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⑤의 사업허가증/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구입한 경우)
 - ※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⑦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 최초 투자신고기관(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⑧ 기업투자비자(D-8) 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⑦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

③ 지점설치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²⁾의 도움이 필요하다.)

- 본사 준비서류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본사 이사회 결의서
 - 본사 정관
 - 본사 대표의 거주증명서
- 한국 지점대표자 준비 서류
 - 지점대표 임명을 승낙하는 취임승락서
 - 지점 대표자의 거주증명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 F-2, 4, 5, 6 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국의 거주증명서

④ 관할구청 또는 관련기관의 인·허가

-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⑤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등기부등본
 -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및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④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⑥ 주재투자비자(D-7) 신청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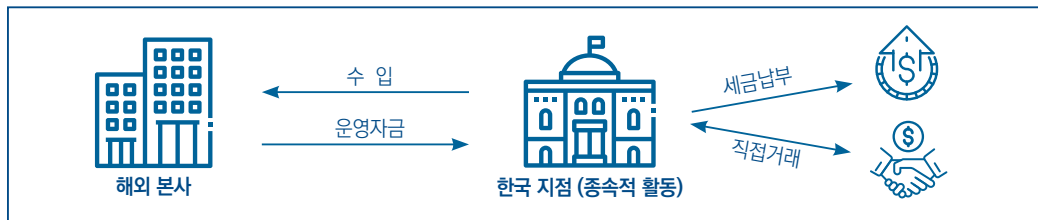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⑥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

Q.03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지점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C가 비거주 상태에서 영리활동을 위한 지점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할 것인지 한국에서 고용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 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지점의 사업 활동은 본사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과 같은 사업 활동만이 가능 하며, 따라서 지점의 모든 활동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 의존한다. 또한 지점의 설립은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본사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지점 대표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비자(F-2, 4, 5, 6)소지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지점이 소재한 곳) 고용이기 때문에 지점의 상태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때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력 및 학력이 지점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B.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회사의 설립 방법



① 설치신고

- 신고접수기관: 은행
-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9-8호 서식)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②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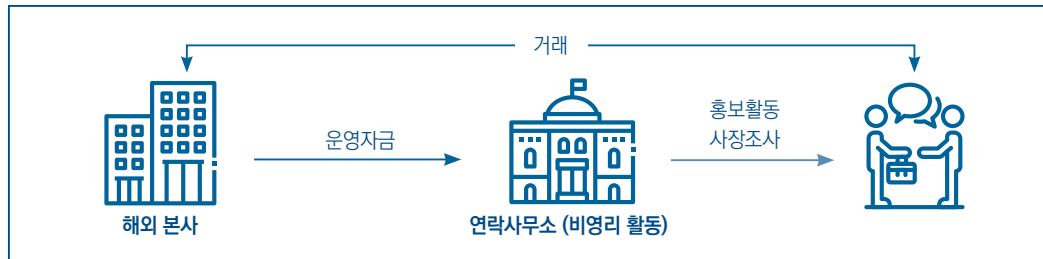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Q.04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연락사무소 설치)

해외에 있는 기업 D는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한국시장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K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해외의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광고만을 진행하려고 한다.

A.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은 연락사무소가 적합하다.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적합하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 광고, 정보수집 등의 보조적인 비영리활동만 수행해야 하며, 판매 등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다.



B.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보조적인 비영리 활동이며,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는 본사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대표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비자(F-2, 4, 5, 6)소지자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곳) 고용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의 상태가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때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력 및 학력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C. 연락사무소설치 방법



① 설치신고

- 신고접수기관 : 은행
-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 9-8호 서식)
 - 본사의 존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본사 대표의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② 사무실 임차 또는 구매

③ 고유번호증 신청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④ 주재투자비자(D-7) 신청 ※ 대표자를 본사에서 파견하는 경우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③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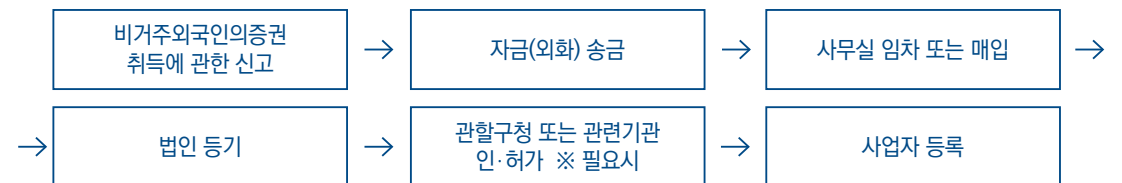
Q.05 해외기업의 한국 내 통장 개설 방법은?

해외에 있는 기업 E는 한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자회사의 자본금이 작은 편이며, 자본의 회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표자도 한국인을 고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본금만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서 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을 개설하려 한다.

A. 기업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필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거주외국인의증권취득에 관한 신고를 통하여, 자본금을 도입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인 법인의 형태를 갖추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B.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자회사의 설립방법은 동일



해당 사례의 자회사 설치하는 자본금의 도입을 위한 신고서의 이름 및 양식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통한 회사 설립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상담사례집에 포함된 아래의 사례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Q.02 해외기업의 한국 진출법은? (한국법인 설치) - 8페이지

C. 외국법인의 존재여부는 해당 국가의 자료를 준비

외국법인의 존재여부는 당연히 해당국가의 서류들을 가지고 와야 한다. 해당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그 법인이 그 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대리인이 이를 처리할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및 신분증)와 공증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

2장

외국인 창업

- Q.06 외국인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 Q.07 외국인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 Q.08 외국인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기술창업)
- Q.09 외국인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 학위 취득자 개인사업)
- Q.10 외국인 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무역업 창업)

2. 외국인 창업

Q.06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F 씨는 한국 방문 중,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A.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현재 상황, 창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형태 및 아이템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비자 상태에 따라서 바로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금액을 가지고 와야 하거나(외국인직접투자),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 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개인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투자금액이 달라지며, 한국에서 학력 정도에 따라 투자금액 및 시작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B. 소지 비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F-5),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회사의 형태를 법인이나 개인사업 중에서 결정하여 설립 후 운영하면 된다.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프랑스, 아일랜드, 영국³⁾)), 방문취업(H-2) 소지자
 -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출국하여 다른 비자상태로 입국해서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운영이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 ※ 현재 체류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출국한 뒤에 준비한 사업장에 관련된 서류로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 ※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 위에 나열된 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
 - 외국인직접투자를 이용하는 방법
 - 최소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 개인사업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기술창업비자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출원 또는 이와 동등하게 법무부에서 인정받은 경우 이를 활용한 기술창업을 통해 기술창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 무역비자를 이용하는 방법
 - 법무부 인증 무역 전문교육 이수 후에 무역비자를 받을 수 있다.

C.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

- 한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후 유학(D-2) 및 구직(D-10)비자를 소지한 경우
 - 1억 원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⁴⁾. 이때 투자금액 중 5천만 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한 외국환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최대 5천만 원 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⁵⁾.(이 때 설립된 회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후 유학(D-2) 및 구직(D-10)비자를 소지한 경우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⁶⁾(OASIS-1 부터 8)에서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는 석사 취득자와 같은 조건으로 개인사업의 경영이 가능하다.
- 외국인 직접투자, 기술창업비자 제도, 무역비자제도 모두 가능하다.

D.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특허 보유/출원) 법무부에서 인정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여 투자금액 없이 창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본요건
 - '필수항목' 점수를 포함하여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8)에서 총 80점 이상의 점수 취득
 - 학사이상의 학력 (학위국가, 전공 불문)
 - ※ 국내 대학의 경우 전문학사도 인정
 - 신규 법인설립(대표자)
 - ※ 법인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E. 무역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

법무부 인증을 받은 무역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무역비자 점수제'의 요건에 따른 점수를 취득하여, 개인사업자로 무역업 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본요건
 - '필수항목'에서의 점수를 10점 이상 포함하여 '무역비자 점수제' 총 60점 이상의 점수 취득
 - 사업자등록증 (※업종: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Q.07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G 씨는 한국에서 창업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본인의 체류자격과 창업 아이템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창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도입한 외환투자금액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운영하려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달라진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최소 1억 원의 이상의 투자금액이, 개인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최소투자금액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B. 투자금액을 들여올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외국인 G 씨는 개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즉, 개인투자이며 이때 지켜야 될 조건은

1. 투자금액은 해외에서 송금
 -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투자금액은 외국환
 - 외환으로 도착하여 환전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H-1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써 위의 국가는 비자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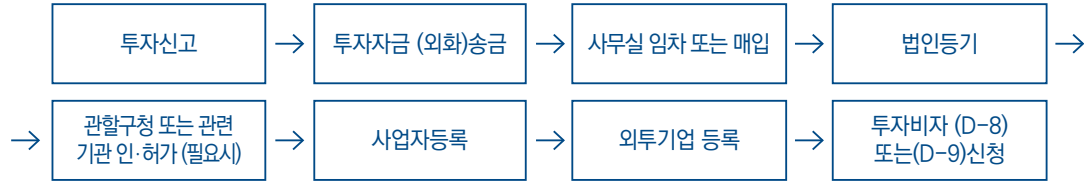
4)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 3억 원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5) 중국의 경우 중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6)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3.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
 - 타인 명의의 송금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회사의 설립 방법



- ① **투자신고**
 ○ 신고접수기관: 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각 기관에서 교부) - 실명확인증(여권)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② **투자금액 송금**
 ○ 세관 휴대반입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 송금인: 외국인투자가
 ※ 송금 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증명서가 발급된다.
- ③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 ④ **법인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⁷⁾의 도움이 필요하다.)**
 ※ 개인사업의 경우 법인 등기 생략
 ○ 준비서류
 - 투자자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 기타
 - 회사명 - 사업목적 - 법인 종류
- ⑤ **관할구청 또는 관련기관의 인·허가**
 ※ 인허가 필요 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 ⑥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⑤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7) 변호사 또는 법무사

- 기타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⑦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등록기관: 최초 투자신고기관(은행 및 KOTRA)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신분증

⑧ 기업투자비자(D-8) 신청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⑦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

Q.08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기술창업)

외국인 H 씨는 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던 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개발까지 마쳤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으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

A. 기술창업비자는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보유, 출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술창업비자는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수는 필수항목, 선택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때 필수항목에서 점수를 얻는 것이 창업비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B. 기술창업비자 점수제도 및 창업비자 요건

- 기본요건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9)'에서 총 80점(필수항목 점수 포함)
 - 학사이상의 학력(학위국가, 전공 불문)
 ※ 국내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학사도 인정
 - 신규 법인설립(대표자)
 ※ 법인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점수 항목
 - 필수항목 및 점수(313점): 1개 이상 필수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OASIS-6 OASIS-9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사람 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5	3	15	각 25	80

(OASIS-6) 발명·창업대전 1~3위 입상(SBA, KIPA, NIPA 운영)

(OASIS-9)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NIPA 운영)

- 선택항목 및 점수 (135점)

구분	OASIS-2 OASIS-4	OASIS-1 OASIS-5 OASIS-7	학 력		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신규 법인설립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 소지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배점	각 25	각 15	10	5	10	15

(OASIS-2)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수료(KIPA 운영)⁸⁾

(OASIS-4) 창업 소양교육 수료(SBA, KPC 운영)

(OASIS-1)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수료(KIPA 운영)

(OASIS-5) 창업코칭 및 멘토링 수료(SBA, KPC, NIPA 운영)

(OASIS-7) 창업인큐베이터 졸업(SBA, KPC, NIPA 운영)

※ 법무부 지정 창업이민센터

기관명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보 확인
서울산업진흥원(SBA)	OASIS 4, 5, 6, 7	global.seoul.go.kr
한국발명진흥회(KIPA)	OASIS 1, 2, 3, 6	ipcampus.kr/oasis-visa
한국생산성본부(KPC)	OASIS 4, 5, 6, 7,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OASIS 5, 6, 7, 8, 9	https://www.k-startupg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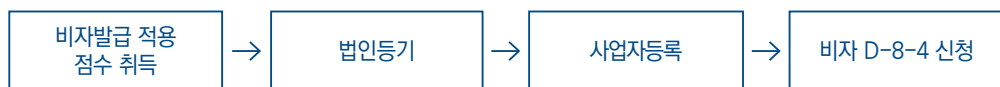
C. 기술창업분야 구직비자(D-10-2) 요건(기술창업 준비 비자)

기술창업비자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필수항목의 점수를 얻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기술창업 준비 비자(D-10-2)를 발급받아서 창업비자를 준비할 수 있다.

○ 기본요건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9)' 수료증 1개 이상
- 학사이상의 학력 (학위국가, 전공 불문)
 - ※ 국내 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학사도 인정
- 기술창업계획서(출입국 지정 양식) 및 실제 사업계획서
- 창업과 관련된 제반활동 증명 (OASIS 참가, 지식재산권 준비 및 출원, 법인설립 준비 등)
 - ※ 기술창업 준비 비자는 최초 6개월간 발급이 되며 최대 3회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연장 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점수 50점 이상이 필요함)

D.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활용한 사업설립 순서



① 비자발급 적용 점수 취득

※ 필수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각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②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③ 법인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⁹⁾의 도움이 필요하다.)

○ 준비서류

- 대표 취임자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 ※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 자본금 설정(은행 잔고증명)
 - ※ 대표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 주주의 거주국 관공서 발행 거주증명서 필요
 - ※ 자본금이 해외에서 오는 경우 은행 신고를 거쳐야 한다.

○ 기타

- 회사명 - 사업목적 - 법인 종류

④ 관할구청 또는 관련기관의 인·허가

※ 인허가 필요 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⑤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④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⑥ 창업비자(D-8-4) 신청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⑤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Q.09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 학위 취득자 개인사업)

외국인 I 씨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출포장 회사를 창업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법인과 개인사업과의 개념 이해가 쉽지 않고, 미래에 업종 추가와 사업장 이전이 간편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기로 하였다.

A. 국내학위 취득자의 개인사업자는 더 작은 투자금액으로 창업 가능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¹⁰⁾. 하지만 국내학위 취득자의 경우 1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이에 해당되는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단, 이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¹¹⁾.

8)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여 추천한 자

9) 변호사 또는 법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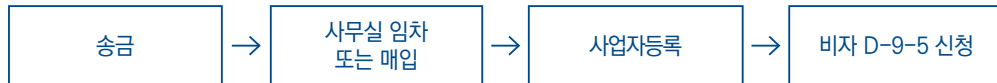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신고후 외국인 본인이 해외에서 외환으로 직접 들어온 투자금액을 말한다.

11) 자본금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들어와야 하나, 외국인직접투자예 해당되지는 않는다. 즉, 투자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B. 국내학위 취득자의 개인사업 창업 요건

- 기본요건
 -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비자 소지자 또는 국내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에서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유학(D-2) 및 구직(D-10) 비자 소지자
 - 외국인거래법 및 외국인거래규정에 따른 1억 원 이상을 투자¹²⁾
 - ※ 이때 1억 원의 투자금액중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

C. 국내학위 취득자의 개인사업 설립 순서



- ① 투자금액 송금**
 - 송금의 조건
 1. 투자금액은 해외에서 송금
 2. 투자금액은 외국환
 - 외환으로 도착하여 환전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이 되어야 한다¹³⁾.
 - ※ 송금완료 후에는 송금기록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잔액증명서가 발급된다.
 - ※ 국내조성자금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최대 5천만 원), 국내조성자금에 대한 잔액증명서 및 통장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 ②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 ③ 관할구청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 ※ 인허가 필요시 관할구청에서 업종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 및 취득
- ④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③의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기타

12) 해외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된 외환을 말한다.

13) 제 3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송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⑤ 무역경영비자(D-9-5) 신청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⑤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Q.10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인 무역업 창업)

외국인 J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제품을 본인의 나라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한다.

A. 국내학위 취득자는 투자금액이 없는 무역업 창업을 가능하다.

국내 학위 취득시 업종이 무역업이라면 점수제를 통하여 투자금액 없이 창업이 가능하다. 기술창업 비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점수제에 따라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점수를 획득하여 창업할 수 있다.

B. 이 제도는 무역비자 요건을 점수제로 완화 한 것이며, 무역실적이 중요하다.

해당 제도를 통한 무역업 창업은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무역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점수 획득이 가능하여 필요 자본금 없이 창업이 가능한 제도이며, 무역실적이 비자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자 등록 후 무역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익활동은 가능하나 비자 연장 시에는 무역실적만이 연장에 사용된다. 이때의 무역실적은 수출에 더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C. 무역비자(D-9-1) 발급기준

- 기본요건
 - 점수제 총 160점 중, 필수항목 점수 10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60점 이상 획득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 무역비자 점수제 항목
 - 필수항목 (최대 65점)

①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구 분	수출실적		무역 실적(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배 점	30	20	15	10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 가능)

② 무역분야 전문성

구 분	무역 관련분야 경력 [㉠]	무역관련 분야 전공 [㉢]	무역 전문교육 이수 [㉡] ※서울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운영
배 점	30	20	15

※ 참고: ㉠해당자에 한해 ㉢ 또는 ㉡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서울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운영)

①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선택항목 (최대 95점)

구 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 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배 점	30	20	15	10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 가능)

② 학력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배 점	20	15	10	5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 가능)

③ 가점

구 분	국내유학 경험 ^㉔	자본금 1억 이상 ^㉕	토픽 3급 또는 KIIP 3급 이상 이수
배 점	30	15	10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㉔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㉕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기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D. 무역비자(D-9-1) 제도를 이용한 사업 설립 순서



① 비자발급 적용 점수 취득

※ 무역비자 점수제 항목의 필수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역전문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참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②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③ 사업자 등록

○ 등록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사업허가증 /수료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기타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④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 등록기관: 한국무역협회 (kita.net)

① 온라인: 한국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

(webdocu.kita.net 접속 또는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 회원사: 대표 ID 로그인

- 비회원사: 범용(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창구 방문(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신청 및 구비서류: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⑤ 무역 비자 신청

○ 신청기관: 체류지 출입국 사무소

○ 제출서류: 상기 ④번까지의 관련서류 + 출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E. 무역비자(D-9-1) 연장 기준

무역비자는 점수제도를 이용한 비자제도로 발급은 간단하나 비자 연장시 무역실적이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무역업 외에 다른 업종을 통하여 수익활동이 가능하나, 이렇게 얻은 수익은 비자연장에 필요한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기본요건: 취득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장이 되며, 필수항목 5점 이상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함

1차 연장허가시 적용기준

점 수	10점 이하	11점~20점	21점 이상
허가기간	6개월	1년	2년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

점 수	10점 이하	11점~20점	21점 이상
허가기간	연장불허	1년	2년

○ 연장점수 항목

- 필수항목(연장허가시 무조건 5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구 분	수출실적				무역 실적(수출+수입) 7만불 이상	전문교육기관 연장 추천서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배 점	30	25	15	8	5	5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 가능)전문교육기관장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무역비자 취득 후 3년 이내 최대 4회 까지만 인정

①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선택항목

구 분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배 점	10	5	2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산정 가능)

②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구 분	500만원 이상	400만원~5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배 점	7	5	3	1

※ 참고: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③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3점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3장

회사 운영

- Q.11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 Q.12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 Q.13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정비자(E-7) 발급의 요건은?
- Q.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 Q.1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 Q.1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은?

3. 회사운영

Q.11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외국인 K 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계획 중으로, 창업 전에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 알고 싶다.

A.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청(nts.go.kr)에서

세금관련 정보 및 세금 수취 업무는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사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정보와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 사례집 등의 유용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영문자료 유효).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납부, 각종 증명 발급 등이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B. 홈택스(hometax.go.kr) 이용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기업 인터넷 뱅킹을 사용 중인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 기업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발급

C.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본 상식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이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며, 모든 물건(서비스)에 대해 부과된다. 부가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 단,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대신에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은 일괄적으로 매출(판매)에 대해 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물건 구매자를 대신하여 내게 된다.¹⁴⁾

○ 부가가치의 신고 및 과세기간

○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내용
1기 예정신고 4.1 ~ 4.25	1.1 ~ 1.31 경영성과
1기 확정신고 7.1 ~ 7.25	4.1 ~ 6.30 경영성과
2기 예정신고 10.1 ~ 10.25	7.1 ~ 9.30 경영성과
2기 확정신고 1.1 ~ 1.25	10.1 ~ 12.31 경영성과

○ 개인사업자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 6.30간의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 12.31	7.1 ~ 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14)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르다.(간접세)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액의 10%-매입액의 10%
-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매입액의 1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각기 다르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도 1년간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대상은 6월 30일까지)소득세는 각기 다른 상황 (기장 및 비기장,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경비 등을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여긴다.
 - 기장한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의 계산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1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법인세: 사업 연도를 종료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¹⁵⁾
법인세 역시 매출에서 원가와 비용 등을 뺀 순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율은 일률 과세이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 법인세의 계산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15)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인은 3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다.

Q.12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외국인 L 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이다. 근로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는데 4대 보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A. 4대 보험은 가입은 의무 사항이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B. 4대 보험의 종류

4대 보험은 ①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②사망, 노령에 대한 국민연금, ③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④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 4대 보험 요율표

종 류	부담주체 및 요율		
	전 체	근로자	사용자(회사)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7.38%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6%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규모별 차이	
산재보험	업종별 차등적용 전액 사업주부담		사업규모별 차이

※ 요율은 해마다 달라지며, 최신자료는 4insu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C. 4대 보험 가입 및 정보 확인

4대 보험의 가입은 4대 사회보험 각 지사(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를 통하여 가능하다.

○ 관련 문의

보험가입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5	1577-1000	1588-0075
홈페이지	www.nps.or.kr	www.nhis.or.kr	http://total.kcomwel.or.kr

D. 회사의 경영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고용 유무에 따라 가입 유형(직장가입, 지역가입)이 달라지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비자 연장에도 영향이 있어서 꼭 가입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급여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비급여 등재 이사라고 하더라도, 추후 비자 연장을 위해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에 당연가입	
2. 건강보험(지역) 자격은 개인별로 취득되고, 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	
3. 건강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 세부 내용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korea.go.kr) 공지사항 확인(2019. 6.19)	

Q.13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정비자(E-7) 발급의 요건은?

외국인 M 씨는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회사의 주요 업무가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서 근로자를 직접 한국으로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 고용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거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A. 외국인 고용을 위한 필수 조건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

○ 국민 고용자의 수

기본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 업종별로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군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직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취업비자가 발급이 될 수 있다.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행(E-6), 특정활동(E-7)이며, 통상적인 취업비자는 E-7이다. 또한 E-7의 경우 사전 85개의 직종별 세부기준이 있으며, 여기에 적합한 요건과 주무관청 고용추천서등의 추가제출 서류가 있다.

○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직군이 관련이 있는지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공과 직군이 같지 않더라도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전공과 이전 경력에 고용하려고 하는 직군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 저임금 편법 활용을 방지해야 함

저임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계약서에는 반드시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기본급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인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B. 외국인고용 시 고용주가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요건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많은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취업비자 요건을 확인한다. 하지만 정확한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회사의 상황(규모, 인력 현황, 업종 등), 채용하고자 하는 직군 및 채용하려는 사람의 정보(경력 및 학력)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올바른 접근이다.

C. 특정활동(E-7)비자의 제출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3cm×4cm) 1배, 수수료
- ② 회사 설립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③ 고용계약서 사본
- ④ 외국인 고용 필요 입증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¹⁶⁾ - 고용추천서 (필요한 경우)

D. 직군에 따른 예¹⁷⁾

○ 주방장 및 조리사:

- 직종 설명: 조리사와 조리실을 감독하거나 직접 음식을 만드는 자
- 직업예시: 양식, 중식, 일식 등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요리사
- ※ 한국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한식, 커피, 전통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6) 외국인 활용계획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korea.go.kr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17) 해당 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korea.go.kr에서 사증 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식당의 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
안산다문화 마을 특구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 (면적 151㎡ 이상, 연매출 부가세 750만원 이상시만 적용)

○ 해외 영업원

- 직종 설명: 해외진출 관련 영어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는 활동을 하는 자
- 직업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영업원
- 회사의 요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를 준용 (최소 5명이상), 외국인투자기업,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적용
- 기타요건: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

Q.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외국인 N 씨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5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5년 동안 T 씨는 거주지 이사, 회사 이전 등을 하였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인 설립 후에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A. 법인의 변동사항은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 법인대표 거주지 변경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대표의 주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등기 시에도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의 거주지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법인대표의 주소 변경 시 주소가 변경되는 시점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 사무실 주소 이전의 경우

법인본점 및 지점의 주소 이전의 경우는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본점의 경우는 이전 후 2주 이내에 지점의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 이사진의 변동 상황에 대한 사항

이사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변경 시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기말미에 이에 따른(퇴임 또는 중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 5년 동안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법인이 휴면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8년을 넘기는 경우 법인이 청산되어버린다.

Q.1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F-4 비자 소지자인 O 씨는 현재의 체류자격에서 한국인과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할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선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A.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려면 이 둘의 개념차이를 먼저 알아야한다.

법인사업자는 돈으로 내가 아닌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인격체를 대신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은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회사가 되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개인사업자를 선택한다면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였을 때 광부가 그 금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을 갖는 것이고, 금의 채굴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 비용을 광부가 부담한다.

○ 반면 법인을 선택한다면, 금의 채굴 전에 채굴에 이용할 돈을 다른 광부들에게 선언하고, 금의 채굴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을 통하여 이를 선언하며, 이 돈이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 이후 금을 채굴하여 수익을 내거나, 채굴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할 때 광부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언되어진 돈에서 사용된다. 광부는 금의 채굴 양과는 상관없이 이 돈을 대신해서 채굴했기 때문에 선언되어진 돈에서 채굴활동을 한 비용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월급이 되는 것이다.

○ 또한 처음 선언한 돈이 광부의 돈이라면, 광부는 주주가 되는 것이고, 이후 금의 채굴양이 늘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을 때, 처음 선언한 돈에서 늘어난 만큼을 자본금에 출자한 비율에 비례해서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배당금이다.

B.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설립, 세금, 운영에서 차이가 난다.

○ 회사의 설립

- 개인사업자는 내가 회사이기 때문에, 세무서에가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을 등록하면 된다.
-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대법원 등기소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한다.

○ 세금의 차이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정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가 되는 것이기에 세금에 있어서는 사업과 개인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면 된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에 따라 세금신고의 횟수가 달라진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부가세를 4회(예정, 확정신고) 해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운영하고 매월 월급을 받는 일종의 근로자이며, 회사에서는 월급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월급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쳐야한다. 또한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처리 해주어야 한다.

○ 운영 관련

① 건강보험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매월 납부하면 된다.
-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정해진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납부를 마치면 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 씩 부담한다.
-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비급여 등재이사) 경우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 ※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가 비자 연장에 필수적이므로, 비급여등재이사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② 회사의 변동사항 발생시 (주소 변동, 업종추가)

- 회사의 주소 변동 발생 시 개인사업자는 이전한 지역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변경하면 되나, 법인의 경우 등기소를 통하여 본점이전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나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 업종추가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의 추가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다면, 정관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

- 법인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 이사진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진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뒤에는 법인이 자동으로 휴면상태로 들어가며 7년 뒤에는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③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시

- 신분증의 주소 변경과는 별도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폐업시

-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해산/청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며, 법인 청산시 정관의 조항에 따라 청산기간이 달라진다.

Q.1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은?

P 씨는 2009년부터 회사를 운영 중이다. 시작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5천 만 원 투자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외국인 단독의 개인사업자는 기업투자(D-8)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개인사업자에게는 더 이상 기업투자(D-8) 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무역경영(D-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세금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A.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인사업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12년 7월)으로 인하여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존 투자한 5천만 원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자본금이 1억 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투자신고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도 최초 투자신고 한 5천만 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B. 법인 전환 시 시작은 투자신고부터

이미 투자신고를 했지만 투자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자 전에 투자신고를 하고 투자금액을 들여와야 한다. 이 때,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신고 하고, 기존에 투자신고를 한 금액은 서류상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차액만큼의 투자금액만 송금을 받으면 된다. 단,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추가 투자금액과 실제 개인사업주가 자본금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생각하여 법인 자본금이 1억 원이 넘게 잘 조정해야 한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정받은 투자금액과 법인의 자본금 모두 최소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C.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신규 법인 설립과 같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시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은 현물출자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법인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실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현물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제 가용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가의 돈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 설립한다는 접근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

D.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이나 형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 없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 운영 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과 같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 개인은 개인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세금 역시 법인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내는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법인의 돈은 법인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상담사례집에 포함된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Q.11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 28 페이지

Q.14 법인 설립 후에 알아야 될 사항 - 32 페이지

Q.1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 32~33 페이지

관련판례: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키량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4장

기 타

- Q.17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 Q.18 유학생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Q.19 자본금 부족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Q.20 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점은?
- Q.21 기술창업비자(D-8-4)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 Q.2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은?
- Q.23 공문서 및 사문서 서류 준비 방법
- Q.24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Q.25 거주사실증명서란?

4. 기타

Q.17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할 때

Q 씨는 한국에서 자국의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자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있다. 투자 신고를 하고 송금을 완료하였고, 법인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사업자가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하던 중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A. 법인의 사업 목적은 복수로

일반음식점이기는 하지만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재료수급을 위해 무역업, 식자재 도소매업을 동반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향후에 다른 사업을 추가, 확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인설립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목적)을 정관상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B. 최초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음식점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영업허가서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상에 일반음식점을 업종으로 기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업허가를 위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정관상에 있는 사업(목적)중에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발급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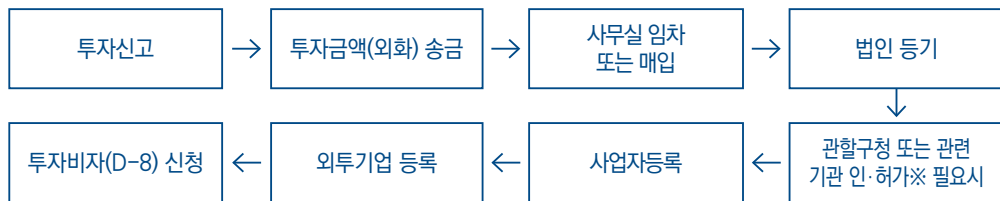
C.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취득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을 발급받게 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에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영업활동을 하면 된다.

Q.18 유학생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설립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R 씨는 한국에서 유학 중(유학생 비자) 창업을 결심했다. 외국인직접투자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 법인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유학생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다.

A. 외국인직접투자 시 체류자격 변경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B. 회사설립의 과정에서 체류자격은 상관이 없다.

외국인이 창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유학생의 신분으로

는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이 불가능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들어온 투자금액으로 회사 설립,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야 최종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즉,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C.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서류를 설명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외국인전자정부(hikorea.go.kr)에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 안내메뉴얼에는 각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해당자, 기본요건 및 신청서류가 나와 있다. 이를 설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Q.19 자본금 부족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S 씨는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있다. 1억 원 상당의 투자 신고를 하고 송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장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 되었다. 사업장을 찾고 계약을 위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불하였고, 이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은행에 갔으나,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의 발급이 거부되었다.

A. 등기소의 잔액증명 인정 기간은 발급 후 15일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이라면, 통장잔액증명으로 자본금 증명을 한다. 이때 잔액증명의 유효기간은 15일이므로, 15일이 지나버리면 잔액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즉, 자본금으로 들어온 돈을 사용하고 다시 잔액증명을 발급받으면, 사용한 돈을 제외한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만 증명이 된다. 즉, 최초 잔액증명 발급 뒤에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돈을 사용하더라도 법인등기까지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최초 증명 받은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B.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최소 자본금은 1억 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투자금액 1억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1장, 2조) 현재 상태는 자본금으로 사용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사용하고 다시 잔액증명을 발급 받았으므로, 자본금이 사용한 만큼 줄어있는 상태이다.

C. 추가송금과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요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신고를 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요건에 맞는 최소투자금액인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잔액증명에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어 버린 경우이므로, 부족한 만큼 투자송금을 하고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최소 외국인직접투자 요건에 맞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8. 9.21.]

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개정 2010. 10. 5., 2016. 7. 28.>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Q.20 독점판매권과 지점과의 차이점은?

T 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영어강사로 다년간 일하던 중 한국시장에는 없는 제품을 발견하고,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며 운영을 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지점 설립이 거부 되었다.

A. 지점설립의 결정은 회사에서

법인의 의사 결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 지점의 설치 및 폐쇄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점장이 되고 싶은 개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지점설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점장의 선임 또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접근 방법은 그 자체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본점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본점과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판매권만으로는 판매권을 증명할 서류 이외에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해외에 존재하는 회사의 지점을 본인이 설립하고 본인이 지점장으로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활동이다.

B. 지점의 대표자로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다만,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C. 지점은 본점의 일부이다

외국기업이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자를 파견하여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이 없을 때 지점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지점이 최소 투자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점의 영업활동 및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또한 지점의 수익은 본점의 수익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소 자본금은 없다 하더라도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본점과 지점사이의 지속적인 자본 흐름이 필요하다.

Q.21 기술창업비자(D-8-4)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은?

외국인 U 씨는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아 '기술창업비자점수제'를 통해 창업하려고 한다. 이때 지식재산권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유와 출원의 차이도 궁금하다.

A.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업비자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각각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으며, 이 둘은 다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모든 항목이 창업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재산권에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창업비자에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이다.

B.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 특허 : 창작품에 대한 고안을 말하며, 원천적인 핵심기술을 뜻한다.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기술적 장치를 말하며, 개량기술 또는 소발명이라고도 한다.

※ 이 둘을 특별하게 구별한 필요는 없다.

- 디자인 : 물건의 디자인을 말한다.

○ 저작권

- 저작권 : 문학, 예술 등의 창작권을 말한다.

- 저작권접권 : 저작물을 배급하는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C. 창업비자 필수 점수

창업비자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 부터 9)' 총 448점에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80점중에 필수 항목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필수항목 및 점수(313점)

구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OASIS-6 OASIS-9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사람 ¹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점	80	50	20	10	5	3	15	각 25	80

(OASIS-6) 발명·창업대전 1~3위 입상 (SBA, KIPA, NIPA 운영)

(OASIS-9)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NIPA 운영)

Q.22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은?

외국인 V 씨는 자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자국 언어교육, 문화를 알리는 활동 및 자원봉사 등을 하는 단체를 만들고 등록한 후 운영하고 싶어 한다.¹⁸⁾

A. 단체를 만들려는 목적 및 활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체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지자체 및 주무관청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것인지,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기 위해서 인지에 따라서 단체 설립 및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봉사활동이나 친목도모가 목적이라면 단체를 등록하지 않아도 단체 이름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 지자체 및 주무관청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무관청 및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에 맞추어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필요 할 수도 있어서 법인체(비영리법인)가 필요 할 수도 있다.

○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 단체로 지정 받아야 한다.

○ 단체가 수행하려는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허가를 받는 주무관청이 달라지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8)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여 추천한 자

B.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의 차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구성에 따라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뉘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세금신고 등의 의무도 가진다. 일반법인과 차이점은 설립등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설립이 된 비영리법인,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단체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주무관청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의 형태에 따라 등록된 법단체의 형태로 지원금의 처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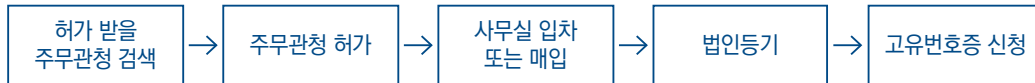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은 등기 없이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하여 이후 단체이름의 통장개설 또는 임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단순하게 모임의 회비 등을 공동의 이름으로 저금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의 허가후 설립등기를 통하여 설립한 법인체 - 자본금의 출처에 따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구별 - 기부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에 단체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등록 - 단체이름의 통장개설, 부동산임대등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활동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단체를 등록하는 행위임 - 각 지자체 또는 부처별 등록 요건이 다름

C.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자본금을 해외에서 가지고와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방법으로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조건(과학기술분야 활동, 전문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이 아니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가 없어서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특정조건 이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



① 허가 받을 주무관청 검색

-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려는 활동을 정확하게 하여 허가를 받을 주무관청을 찾아야 한다.
- ※ 수행하려는 활동에 따라 설립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

②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③ 주무관청 허가 (각 주무관청별 다른 허가 요건을 가지고 있다.)

- 신고접수기관: 주무관청
-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 자본금 증명
 - ※ 주무관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나 최소 1년간 비영리법인을 운영가능한 자본금이 필요하다.
 - 기타 주무관청별 필요 서류

④ 법인등기(한국어로 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므로, 전문가¹⁹⁾의 도움이 필요하다.)

- 준비서류
 - 대표자 및 이사인의 거주증명서 • 출연금 증명 • 정관
 - ※ 추가서류가 더 있을 수 있다. ⑤ 고유번호증 신청

-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E.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방법



① 사무실 임차 또는 매입

② 고유번호증 신청

- 신고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제출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세무서 비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을 매입한 경우)
 - ※ 법인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총회 회의록

Q.23 해외 발급 공문서 및 사문서의 사용 준비 방법

외국인 W 씨는 한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본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공문서 및 사문서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공문서와 사문서란?

공문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 및 수신하는 공식문서를 의미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반면, 사문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반드시 법률적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한다.

※ 대표적인 공문서와 사문서의 예

공문서=관공서 발행	사문서=기업 또는 개인이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거주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결의서 • 위임장 • 정관 • 번역된 문서

B. 공문서의 준비

공문서의 한국사용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미체결국의 문서는 공증 후에 자국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문서는 한국 내에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19) 변호사 또는 법우사

C. 사문서의 준비

사문서의 경우라도 한국에서 회사 설치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서를 공증해야 한다.

해당 문서를 그 나라의 공증인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을 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대상화를 하고, 이렇게 공증된 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자국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의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미체결국의 경우만)을 받으면 된다.

Q.24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인 X 씨는 한국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다.

A.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지구촌의 국제화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때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 간에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은 2007년 7월 14일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 발효 되었으며, 현재 (2019. 5) 117개국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²⁰⁾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18)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52)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	미국
중남미 (30)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5)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지니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권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 문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 해당 서류 발급 국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으로부터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 원칙적으로 '원문'을 대상으로 한다.

B.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가가 아닌 경우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미가입 국가의 경우 관련 서류를 본국에서 공증²¹⁾ 받은 후, 본국 주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에서 사용 할 수 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미가입 국가만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인정해주며, 협약 가입국가의 경우 무조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한다.

Q.25 거주사실증명서란?

외국인 Y 씨는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소로부터 본인의 거주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거주사실증명서' 제출을 요청 받았다. 본국에 알아본 결과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관공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주증명서'가 무엇이며, 본국에서 해당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서류로 대체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거주사실증명서란?

'거주사실증명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서류상의 거주지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거주사실증명서 상에는 성명, 생일, 주소, 국적 등이 기재되며 관공서에서 발급되어야 한다.

○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한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사용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발급 받은 서류를 사용한다.

-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 이를 공증하여 사용한다.

※ 해당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공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 후 한국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문서의 경우도 해당 국가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공증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이 필요하다.

※ 해당 서류가 영어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문서를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기타 언어의 경우 최소 영어까지의 번역이 필요하다.

20)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41>

21) 본국 공증을 말한다.

| 참고자료 |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비자관련 정보
외국인전자정부
www.hikorea.go.kr



세금관련 정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www.nts.go.kr



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law.go.kr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서비스
www.0404.go.kr



특허 검색 및 출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



등기선례/예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본 자료는 외국인 창업상담 시 자주 질문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참고용임을 명시하는 바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중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 판 : 2015년 12월

증보판 : 2019년 11월

발행처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글로벌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집 필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최홍석